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13.(수) 11:00 < 9.14.(목) 조간 > 배포 2023. 9. 13.(수)

업종판단이 불명확한 신산업에 대한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된다

- 민간투자, 업종특례지구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앞으로는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지고, 낡은(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9월 1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해 신속한 업종판단을 하도록 하여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하여,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 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추고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안근영 (044-203-440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내용**

구분	개정 내용	비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업종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추가	· (현행) 산업시설구역만 지정 가능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 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 차액'에서 '지가차액'으로 변경	
	개발이익 정산대상*에서 '지목 변경' 삭제 * 용도별 구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지목 변경	· (용도별 구역)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구역 등 · (지목 변경) 공장용지 → 창고용지 등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재투자 대상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	· (현행)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확충, 산업용지 및 시설의 분양가격 인하에 재투자
	개발이익 납부방식을 '준공인가일까지 일시납부'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 납부'로 개정	
	관리기관은 개발이익 재투자금 사용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고 연간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정기 보고	
산업단지 관리지침	업종특례지구 신청 요건 완화(국가산단 최소면적 15만㎡ → 10만㎡ 이상, 산업용지 소유자의 3/4 → 2/3이상 동의)	
	업종특례지구 제한 예외업종에 '벤처캐피탈(기타금융투자업)' 추가	
	신산업 등 입주업종 판단 심의기구 설치·운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은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연구개발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완화(40% → 20% 이상)	· (기준건축면적률)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연면적 비율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현행화	· 법령명 현행화 등

※ (구조고도화사업) 노후산단 내 혁신·문화·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이 있음

※ (업종특례지구) 입주업종 제한 완화를 위해 농업, 건설업 등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구역으로, 국가산단 1곳, 일반산단 10곳이 지정되어 있음